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10
----------	------

발의연월일 : 2017. 3. 30.

발의자 : 전재수 · 박재호 · 서형수

정재호 · 김해영 · 이종걸

최인호 · 유성엽 · 도종환

김영춘 · 조승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지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는 제외)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

법률 제 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호 중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을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p> <p>1. ~ 8. (생 략)</p> <p>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u>화장시설</u>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p>	<p>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p> <p>-----</p> <p>-----</p> <p>-----</p> <p>-----.</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9. -----</p> <p>----- <u>화장시</u></p> <p>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제외한다)</p>

10. ~ 29. (생략)

10. ~ 29. (현행과 같음)